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25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상배	위상복	박성도	손정수	03/30 代손정수	
협 조	기획예산과장 이용석				

## 2015.4.29. 재·보궐선거 추진계획

2015.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I 선거 개요

- 선거일 : 2015. 4. 29(수) 06:00~20:00
- 선거대상 : 12개 선거구(3.18 현재)
  - 국회의원(4) : 서울 관악구를, 인천 서구·강화군을, 광주 서구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 광역의원(1) : 강원 양구군
  - 기초의원(7) : 서울 성북구아(장위3동, 석관동),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평택시다,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나
- 투표소 : 장위3동(4개소), 석관동(8개소)
- 개표소 : 성북구청 지하다목적홀
- 주요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후보자등록이전까지 등록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3.30일 현재)

등록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3.20(금)	무소속	김남효	64.7.27 (남)	자영업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성북구의회2,3대 의원 현)석관동마을안전협의회 장
3.25(수)	새정치 민주연합	최은석	55.9.15 (남)	정당인	고구려대학교 2학년 재학중	전)동아일보지국장(월계) 전)청소년지도위원회장(장3)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등록(4.9~4.10) 전까지  
※ 후보자 등록 : 4.9~4.10(오전 9시~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13일) : 4.16~4.28(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4.24(금)~4.25(토) 06:00~18:00
- 투표 : 4.29(수) 06:00~20:00

## II 선거 관리 일반 개요

□ 투표구 및 관할구역 현황 : 2동 12투표구(장위3동 4투, 석관동 8투)

명 칭	구 역(동)	비 고
장위제3동 제1투표구	4, 7, 9, 10, 11, 12	
장위제3동 제2투표구	1, 2, 3, 5, 6, 8	
장위제3동 제3투표구	13, 14, 15, 16, 17	
장위제3동 제4투표구	18, 19, 20, 21, 22	
석관동 제1투표구	1, 2, 3, 4, 5, 6	
석관동 제2투표구	15, 21, 22, 23, 24, 25	
석관동 제3투표구	7, 8, 9, 16, 17, 18, 19, 20	
석관동 제4투표구	10, 11, 12, 13, 14	
석관동 제5투표구	34, 35, 36, 37	
석관동 제6투표구	31, 32, 33, 38, 39	
석관동 제7투표구	26, 27, 28, 29, 30, 43	
석관동 제8투표구	40, 41, 42	

□ 선거인수 등 현황

인 구 수 (재외국민 / 외국인)	세 대 수 (재외국민 / 외국인)	19세이상 주민수 (재외국민 / 외국인)	비 고
53,433 (100/56)	22,810 (100/56)	45,516 (95/56)	

□ 사전투표소 현황

투표소명	건물명(층수)	투표소 주소	면적(㎡)	장소유형	승강기 유무
장위제3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4층, 로비)	한천로95길 7	75	공공기관·단체사무소	유
석관동 사전투표소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커뮤니티센터(1층)	화랑로 210-26	72	기타	-

□ 투표소 현황

투표소명	건물명(층수)	투표소 주소	면적(㎡)	당해 여부	장소 유형	승강기 유무	장애인 경사로 여부
장위3동 제1투표소	장위3동주민센터(3층)	한천로 657	91	○	읍·면·동 등 관공서	무	이동통로 불필요
장위3동 제2투표소	삼익아파트 주차장(지하1층)	화랑로37길 42	91	○	기타	유	기존 설치
장위3동 제3투표소	서울특별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1층, 별님반)	한천로95길 7	42	인접	공공기관·단체사무소	-	기존 설치
장위3동 제4투표소	참누리아파트205동(1층,체력단련실)	한천로101길 18	67	○	기타	-	이동통로 불필요
석관동 제1투표소	석관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화랑로 296	120	○	읍·면·동 등 관공서	무	이동통로 불필요
석관동 제2투표소	석관동주민센터(3층, 강의실)	화랑로 296	68	○	읍·면·동 등 관공서	무	이동통로 불필요
석관동 제3투표소	상진운수(2층, 교양실)	한천로76가길 2	88	○	기타	무	이동통로 불필요
석관동 제4투표소	코오롱아파트(1층, 경로당)	한천로 509	48	○	경로당 등 복지회관	-	경사로 설치
석관동 제5투표소	석관두산아파트(1층, 경로당)	화랑로48길 16	65	○	경로당 등 복지회관	-	경사로 설치
석관동 제6투표소	석관실버복지센터(1층)	화랑로32길 88	72	○	경로당 등 복지회관	-	기존 설치
석관동 제7투표소	래미안석관아파트(2층,입주자대표회의실)	화랑로 214	55	○	기타	무	이동통로 불필요
석관동 제8투표소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커뮤니티센터(1층)	화랑로 210-26	72	○	기타	-	이동통로 불필요

□ 개표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Ⅲ 법정사무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 법정선거사무 주요일정 ▶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4.7(화)~4.11(토)
  -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 4.2(목) 18:30분 이후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4.12(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4.12(일)~4.14(화)
- 선거인명부 확정 : 4.17(금)
- 확정 명부의 인터넷 열람 실시 : 4.18(토)~4.29(수)
- 투표안내문 발송 : 4.19(일)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 4.24(금)~4.25(토) 06:00~18:00
- 사전투표소투표자 정보를 반영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 4.26(일)
- 투표 실시 : 4.29(수) 06:00~20:00

#### Ⅰ 명부작성전 준비

- 주민등록 일제 정리(3.20~4.6)
  - 추진기관 :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관리(3.20~4.6) \* 명부작성후 선거일전까지 계속 관리
  - 조사대상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를 '결격 사유조회시스템' 통해 조사후 선거인명부 작성에 반영
  - ※ 선거법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행자부에서 시스템 입력
  - ※ '14.5.29이후 법원행정처에서 통보받은 피성년후견인은 등록기준지에서 주소지로 통보하여 선거권 없는 자 등록하도록 조
- 선거실시지역 담당공무원 교육 참석(3.27, 행자부 주관)
  - 참 석 : 5명(구청 선거담당, 장위3동, 석관동 선거담당 및 주민등록담당)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제반 법정선거사무 처리요령

#### Ⅱ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관리(4.7~4.11)
  - 작성권자 : 구(일반구 포함)·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
  - 선거일(4.29)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명부작성기준일(4.7) 현재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대장(지방선거에 한함)에 따라 작성
  - 선거인명부 출력
    - 작성기준일(4.7) 선거권이 없는 자,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1부 ※ 예비선거인명부는 4.2 작성 예정
    - 작성기간마감일(4.11) 거소투표신고인,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등 정리 후 2부 (구·시·군선관위송부용 1, 열람용 1)
- 거소투표신고 및 신고인명부 작성·관리(4.7~4.11)
  - 신고대상(거소투표 실시, 공직선거법 §38④ §201①, 규칙§11)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편 신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인"으로 기재하고 투표구별 2부(구·시·군의 장 및 관할 선관위용 각 1부) 작성

※ 거소투표용지 발송(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 4.19까지

**유의사항**

- ◆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소투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 투표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거소투표대상자와 선거구의 관할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 이외에는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4.12~4.14, 09:00~18:00) ※ 인터넷열람은 상시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열람 개시일전 3일까지(4.9까지) 공고
  -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결과불복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불복 신청
- **선거인명부 확정(4.17) 및 선관위 송부**
  - 확정상황통보서 및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선관위 송부
- **확정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4.18~4.29)
  - 구·시·군별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열람서비스 제공

※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점검(4.8~4.14 예정, 행자부)

**③ 사전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4.24(금)~4.25(토), 06:00~18:00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
  - 작성된 통합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만 사용하고, 사전투표 다음날(4.26) 사전투표자 정보를 반영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당일(4.29) 사용

○ 사전투표소 운영관련 주요일정

구분		일시
교육	1차 교육	4.7.(화)
모의시험	1차 모의시험	4.14.(화) ~ 4.15.(수)
교육	2차 교육	4.20.(월)
모의시험	2차 모의시험	4.23.(목)
사전투표일		4.24.(금) ~ 25.(토)

- 사전투표소 인력 운영 : 20명 (동별 10명)
  - 사전투표 관리관 2명(동별 1명) - 대행사무원 2명(동별 1명 - 선관위)
  - 기술운영요원 2명(동별 1명)
  - 명부단말기운영 및 본인확인 요원 10명(동별 5명)
  - 투표함 관리 요원 4명(동별 2명)

**④ 투개표**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설치, **선거일전 10일(4.19)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관위 투·개표소 설치 및 인력 등 각종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 투·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출입할 수 없는 자 철거 통제, 필요시 경찰공무원 지원 협조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관할 경찰서, 소방서 협조)
  - 투·개표소 건물 및 주변의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고정배치

## IV 투·개표 사무인력 등 지원계획

### □ 소요인력 현황

#### ○ 총괄현황

(단위:명)

계	투 표 사무원	사전투표 사무원	개 표 사무원	상황실 요원	간사·서기	예비자	기타
173	87	16	40	10	4	5	11

※ (사전)투표관리관 14명, 기술운영요원 2명, 투표함 등 회송 24명 등은 미포함

#### ○ 세부소요내역

분 야	인 원	협조시기	대상직원	지원 방법	담당업무
사전투표 사무원	16인 - 보이화요원 : 6 - 투표요지관리요원 : 6 - 투표함담당요원 : 4	2015. 4. ~4. 25. ※ 교육, 모의시험 및 사전투표기간 중	성북구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출장 발령	사전투표 관리
사전투표 전사·통신 비상대기	2인 이상	2015. 4. 24. ~ 25. ※ 사전투표 기간 중, 협조요청시	전사·통신 관련 부서직원	부서 대기	사전투표소 국가 전선망 장애처리 (요청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비상대기	1인	2015. 4. 24. ~ 25.	성북구 소속공무원	부서 대기	사전투표선거인 수송대기(요청시)
투표용지등 수송	2인	2015. 4. 28. ~수송종료시까지	해당 동소속 간사	출장 발령	선거일전 투표용지·투표함 등 운송미세터무 수송시 책임요원
투표함등 회송	24인 - 투표관리관 12 - 행정담당투표사무원 : 12	2015. 4. 29. 20:00 ~회송종료시까지	투표관리관 행정담당투표사무원	출장 발령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직송시 투표관리관 및 회송책임지임
투표함등 비상대기	1인	2015. 4. 29. ~회송종료시까지	성북구 소속공무원	부서 대기	투표함 회송시 비상상황발생시 투입
투표 사무원	87인 - 투표관리관 12명 미포함	2015. 4. 29. 05:00 ~ 투표종료시까지	성북구 동소속공무원 ※ 추천기준 : 협조사항참조	출장 발령	투표사무 관리
투표함 접수	5인	2015. 4. 28. ~ 29. ※ 사전교육 및 개표당일	성북구 소속공무원	출장 발령	투표함 접수관리
개 표 사무원	40인 (예비 16명 별도)	2015. 4. 29. 18:00 ~개표종료시까지	성북구소속 공무원	출장 발령	개표사무보조
의 료 요원등	3인	2015. 4. 29. 18:00 ~개표종료시까지	인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	출장 발령	개표진행중 응급 환자발생시 조치

#### ○ 인력배치방법

- 보궐선거일인 4.29(수)은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구 직원위주 배치
- 선거기한이 촉박하여 지난 6·4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 근무했던 경험 있는 직원위주로 배치

### □ 동위원회 예산지원

#### ○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급량비 지원

#### ○ 지원기준 < 현원 \* 7,000원 \* 10일 >

- 장위3동 : 16명 \* 7,000원 \* 15일 = 1,680천원
- 석관동 : 19명 \* 7,000원 \* 15일 = 1,995천원
- 자치행정과 : 20명 \* 7,000원 \* 10일 = 1,400천원

#### ○ 지원액 : 5,075천원

#### ○ 지원방법 :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포괄비 지원협조

## V 행정사항

#### ○ 전부서

- 법정선거 업무 투·개표 사무인력 적극 지원

#### ○ 홍보전산과

- 4.2(목) 예비명부출력 / 4.7(화) 본명부 출력 / 4.11(토) 작성마감시 근무
- 4.11(토) 18:30분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후 인터넷 열람용 명부 파일 작성 4.12(일) 0시부터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
- 4.17(금) 선거인 명부 확정 후 4.18(토) 0시부터 4.29.(수)까지 확정명부의 인터넷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

○ 기획예산과

-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포괄급량비 지원 협조

○ 행정지원과

- 개표장 이용 협조 : 2015. 4.25.(토) ~ 4.29.(수) 개표종료시까지
- 음향장비, 전기시설, 주차시설, 탁자 등 부대시설·장비 사용 등 협조
- 사전투표(4.24 ~ 4.25.) 예비차량 및 인력 지원 협조 등

- [붙임] 1. 일정별 보고 사항 및 서식  
 2. 재·보궐선거 확정지역(3.18현재)  
 3.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붙임 1**    **일정별 보고사항 및 제출서식**

일 정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비 고
4. 7 (D-22) (화)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기타통보서상의 연령별 현황 포함)	4.7 (화)	*RIUS자료 메일송부
4.12 (D-17) (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4.12 (일)	“
4.17 (D-12) (금)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4.17 (금)	“
4.19 (D-10) (일)	○ 투표소 공고상황 (투표소 설치 장소, 건물 층수별 현황)	4.19 (일)	양식에 따라 메일송부
4.20 (D-9) (월)	○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 공고	4.20 (월)	“
4.26 (D-3) (일)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	4.26 (일)	“
4.28 (D-1) (화)	○ 투·개표소 설치상황	4.28 (화)	“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4.17)

투표구명	① 인구수 (년월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불복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신명부자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⑦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남										
		여										
		계										
		남										
		여										
		계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2. ①부터 ⑦까지의 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17>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연령별 현황(4.17)

(단위 : 명)

투표구명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지방선거만 해당)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수, 외국인수는 동일서식으로 별지 작성
- ※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 작성



**선거인명부확정내역(4.17)**

투표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②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 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4]**

**1 투표소 공고상황(4.19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분	계	설치장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	개소						
장애인의 편의	승강기 설치	개소					
	안내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분	계	건물 층수별				※임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표소	개소					
장애인의 편의	승강기 설치	개소				
	안내도우미	명				

**2 사전투표소 현황(4.20까지)**

구분	계	건물 층수별				통신망구성방식	
		지하	1층	2층	3층이상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전용망 설치
투표소	개소						

[서식 5]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4.26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 가 공무원	지 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 원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6]

투·개표소 설치상황(4.28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 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

[서식 7]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보)

(미담, 특이사항)

수 신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발 신 : ○○시·도 ○○과장

체 목 : '15년 상반기 채·보궐선거(4.29)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향후)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 사항 등

**붙임 2 재·보궐선거 실시 확정지역**

‘15.3.18현재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	실시사유		사유확정일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국회의원 (4)	서울	관악구을	10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인천	서구·강화군을	18 (검내동, 검내2동, 검내3동, 검내4동, 검내5동, 검내6동, 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내가면, 하장면, 양천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안덕수 (새누리당)	·당선무효	15.3.12 (사유발생일)
	광주	서구을	7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회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11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소속정당 해산)	14.12.19
광역의원 (1)	강원	양구군	5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이기찬 (새누리당)	·당선무효	15.2.26
기초의원 (7)	서울	성북구아	2 (장외3동, 석관동)	김동수 (새누리당)	·사직	15.2.2
	인천	강화군나	8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김병연 (새정치연합)	·파선거권상실	15.1.23
	경기	광명시라	4 (한남동, 한남2동, 소하동, 소하2동)	정용연 (새정치연합)	·사직	15.3.9
	경기	평택시다	3 (송탄동, 통북동, 세교동)	한숙자 (새누리당)	·당선무효	15.2.16
	경기	의왕시가	3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조규홍 (새누리당)	·사망	14.11.5
	전남	곡성군가	5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죽곡면, 목사동면)	최용환 (새정치연합)	·당선무효	15.1.12
	경북	고령군나	4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손형순 (새누리당)	·당선무효	14.11.6

**붙임 3 재·보궐선거 (4.29)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1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발령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51①② 규§26의2③
14.12.30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16.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29.까지	목	각급선거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라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2. 15.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 28.부터 4. 2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	법§86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4. 7.부터 4. 11.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4. 9.부터 4. 10.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5.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16.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7.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4. 17.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9.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147⑧ 법§65⑥, 154①⑤ 규§77 법§65⑥, 153① 규§76
4. 24.부터 4. 25.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29.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5. 11.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5. 29.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 후 30일 이내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57①, 규§25① 정규법§40①
6. 28.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